

정 관

제 정 : 1957.4.10

개 정 : 2015.3.20

제 5 장 이사와 이사회

제 24 조 (이사의 정원 및 선임)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6명 이내로 한다.

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
③ 본 회사는 이사선임시 상법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25 조 (이사의 임기)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
제 26 조 (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)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.

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.

제 27 조 (이사의 보선)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이 정관 제 24 조에서 정하는 정원을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28 조 (대표이사) 이사회의 결의로써 1명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각기 회사를 대표한다.

제 29 조 (회장 등의 선임과 직무)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 및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.

②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 및 상무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며,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29 조의 2 (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)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 배(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

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 조(경업금지), 제 397 조의 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 398 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30 조 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

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 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.

제 31 조 (이사회 결의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.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4. 기타 법령,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에 위임이 금지된 사항

② 이사회는 제 1 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 32 조 (이사회의 결의방법) ① 이사회의 결의는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단, 제 34 조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된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결의내용과 다른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석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33 조 (이사회의 의사록) 이사회의사록에는 의안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.